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Way of Trust Restoration through Uplifting Police Integrity

이 효 민

영산대학교

Lee hyo-min

Younsan Univ.

요약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3년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 율기육조 중에서 제2조 청심에서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이 대중매체의 도마에 끊임없이 회자되며, 이는 경찰조직구성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찰조직의 내·외적 환경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I. 서론

한 경찰공무원이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인에게 찾아주었다가 주인의 답례로 음료수 값으로 2500원 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찰공무원은 250배인 약67만원의 벌금을 내고 부패경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 사건은 2009년 핀란드에서 실제로 발생되었던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시민 802명을 대상)에서 응답자의 95.8%가 '음료수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반부패에 관한 선진국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온정주의적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인식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 경찰공무원 청렴성과 부정부패에 관한 논의

1. 청렴도와 부패에 관한 논의

2002년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는 2014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라는 적극적인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청렴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근(2007)은 경찰청렴도의 개념 규정을 “경찰공무원 및 경찰조직이 직무 내·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인 공직윤리를 지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 및 의지의 정도”[1]라고 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의 공공부문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국가청렴도 지수’라고 한다. 따라서 청렴은 좁게는 반부패와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넓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2]

2. 경찰부패의 유형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수행 및 권력행사로서의 경찰부패는 부패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Prenzler(2009)는 경찰부패를 여섯가지로 유형화 하였는데, ① 전통적인 경찰부패 및 부당취득(graft or classic corruption), ② 형사사법 운영절차 내 경찰부패(Process corruption), ③ 과도한 경찰권 사용(excessive force), ④ 사소한 경찰부정행위(miscellaneous misconduct), ⑤ 조직내부 경찰부패 및 직장비행(internal corruption or workplace deviance), ⑥ 근무시간 이외의 경찰 부정행위(unprofessional conduct off duty)로 나누어 경찰부패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미국의 경찰조직의 특성과 국가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완벽하게 대입하여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경찰업무의 공통적인 특성상 몇가지 유형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하게 인지되고 있는 부패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재구성한 유형은 이상열(2003)의 연구로 경찰부패의 사례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단속관련, 규제관련, 알선수뢰관련, 사건무마 관련, 편의 및 정보제공 유형 등으로 살펴보았다.

Ⅲ. 경찰청렴도 실태와 청렴도 저해요인

다음의 표1은 대검찰청에서 2013년도에 발간한 범죄백서의 내용중에서 2012년에 발생된 범죄중에서 공무원 범죄 현황만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내용이다.

표 1. 공무원 범죄자 현황 (단위: 명)

소속 기관	계	국세청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계	13,308	96 (0.7%)	250 (1.9%)	50 (0.4%)	871 (6.5%)	93 (0.7%)
형법범	7,028	44 (0.6%)	178 (2.5%)	34 (0.5%)	529 (7.5%)	31 (0.4%)
재산	1,271	6 (0.5%)	22 (1.7%)	8 (0.6%)	59 (4.6%)	14 (1.1%)
간력(용약)	310	5 (1.6%)	5 (1.6%)	1 (0.3%)	24 (7.7%)	1 (0.3%)
간력(복역)	1,741	11 (0.6%)	42 (2.4%)	5 (0.3%)	94 (5.4%)	2 (0.1%)
위조	606	- (0.0%)	8 (1.3%)	1 (0.2%)	48 (7.9%)	1 (0.2%)
공무원	2,026	15 (0.7%)	63 (3.1%)	17 (0.8%)	244 (12.0%)	12 (0.6%)
풍속	202	- (0.0%)	1 (0.5%)	- (0.0%)	17 (8.4%)	- (0.0%)
과실	74	1 (1.4%)	2 (2.7%)	- (0.0%)	1 (1.4%)	- (0.0%)
기타형법	899	8 (0.9%)	36 (4.0%)	2 (0.2%)	51 (5.7%)	2 (0.2%)

Ⅳ. 경찰청렴도 제고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1. 교육강화를 통한 윤리의식의 제고와 조직 분위기 쇄신

경찰공무원은 타 기관의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유에서 경찰행정의 특수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 범죄사건과 관련되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범죄 내지는 비위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정계에 대한 처벌수위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계급별, 지역별, 처벌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부패행위인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사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 또는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제

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 교육훈련과 상담 등의 기법을 통하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시스템상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4]

3.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청렴성 검증 강화

개인적 소질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썩은사과가설이론,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 등을 주장한다. 즉 조직에 문제가 있는 구성원을 받아들인다면 안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과정은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렴성에 관한 부분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많은 부분들이 검증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입경찰관 채용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지의 형태는 대외비로 되어 있으나, 외부에 유출되어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문항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사용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집행기능과 함께 국민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분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갈길이 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범죄 또는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쉬운 대상자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적 예방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경찰관들을 교육하는데 힘써야 함과 더불어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의 자질검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경찰의 대국민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 [1] 김용근, "경찰청렴도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월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7-138, 2007.
- [2] 김민재, "다산 정약용의 '청렴관'에 대한 일고찰",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제36집, p.118, 2014.
- [3] 양한술, "경찰문화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이 부패의 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3, 2014.
- [4] 한상암,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pp.209-240, 2006.